
학생 포상 규정



장훈고등학교

학생 포상 규정

(2025.03.01. 시행)

교무입학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 포상을 공정하고 다양하게 시행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발굴, 신장하는 동시에 성취감을 북돋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교내외 생활 중에 타의 귀감이 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3조(절차) ① 포상은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학생포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② 외부기관에서 학생의 포상 추천 의뢰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추천한다.

제2장 학생포상위원회

제4조(목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을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교감, 교무입학부장, 연구기획부장, 생활안전부장, 창의인재부장과 포상 대상자가 있는 학년의 학년부장 및 해당 포상에 관련된 업무담당 부장 및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제6조(기능) ① 학생의 포상에 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 한다

② 학생 포상 대상자 선정 등 학생 포상 전반에 관해 심의한다.

제7조(심의)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3장 포상

제8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인성상,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 공로상, 교과우수상, 경시대회 우수상, 3년 개근상, 졸업특별상, 3개년 학업성과 최우수상, 3개년 학교생활 최우수상으로 구분하며, 그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포상에 있어서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의 여부와 종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기준) ① 인성상 : 3무5행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학생 중, 흡연, 폭력 행사 관련 전적이 없고 상점이 10점 이상인 학생(복수의 교사가 부여한 상점 5점 이상씩 포함)으로서, 교사의 공적 추천 및 공적심의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자

② 효행상 : 부모나 웃어른을 공경하는 등, 효행을 실천하는 자발성과 헌신성이 남다른 학생을 교사가 발굴 추천하고 공적심의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자

③ 봉사상 : 학급 휴대폰 수거, 교내외 청소, 또래상담 활동 등의 실천면, 계량적 봉사 시수면 등에서 봉사의 진정성, 헌신적 자발성이 입증되는 학생, 외부 기관장으로부터 관련 표창장을 수상한 학생 등, 교사의 추천 및 공적심의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자

④ 선행상 : 환경 불우, 거동 불편, 학업 부진, 왕따 피해 등, 소외된 학우의 적응을 돕거나, 습득물 신고, 사고 예방 등, 자발적 선의와 헌신으로 공동체의 평화에 기여한 사례를 근거로 교사의 추천 및 공적심의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자

⑤ 공로상 : 인화에 힘쓰고 솔선수범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학생자치기구 임원 중 교사의 추천 및 공적심의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자

⑥ 교과우수상 : 각 학년 또는 학기 과목별 상위 4%이내의 성적우수자

1. 교육과정 상 학년 단위 이수 교과인 경우 학년말에, 학기 단위 이수 교과인 경우 학기말에 집계

⑦ (교과) 경시대회 : 해당 교과 관련 지필 평가 결과, 각 학년 전체 인원 중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⑧ 3년 개근상 : 1, 2, 3학년 모두 개근인 학생

⑨ 졸업특별상 : 3년(6학기) 동안의 석차등급 평균을 기준으로 종합등위를 결정 등위에 따른 포상

등위	상장	등위	상장
1	학교장상	10	영등포구청장상
2	재단이사장상	11	영등포구의회 의장상
3	국회의원상	12	영등포구의회 의장상
4	국회의원상	13	총동문회장상
5	국회의원상	14	총동문회장상
6	국회의원상	15	서울시사립학교장회회장상
7	국회의원상	1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상
8	서울시의회장상	17	학부모회장상
9	영등포구청장상		

2. 기타 외부상 수상자는 추천 의뢰된 내용에 의하여 3학년 담임협의회에서 추천하여 학생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⑩ 3개년 학업성과 최우수상, 3개년 학교생활 최우수상 :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기간 중 본교 교육이념에 따라 최고의 인재로 성장한 학생에게 수여

1. 3학년 학생 중 5개 학기 석차등급 평균 2.5 이내로 교사추천과 학생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6명(학업성과 부문 3명, 학교생활 부문 3명) 내외를 포상

2. 학업성과 부문(교과 관련 분야)은 교과 관련 분야 수상, 학교 프로그램 참여도, 등위를 결정짓는 교내 교과능력평가 등에서 수상 횟수,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의 성취도, 교육 관련 기관의 교외경시대회 입상실적 및 기타 학생포상위원회에서 인정한 범위의 실적을 통해 평가

3. 학교생활 부문(비교과 관련 분야)은 학교활동에서의 리더십 실천, 교내 봉사활동을 제외한 봉사활동 누적 시간, 교육관련 기관의 품행 분야 교외상 수상 또는 표창 수상, 장훈 예술제, 교내 동아리 및 예체능행사에서 수상 또는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기타 학생포상위원회에서 인정한 범위의 실적을 통해 평가

제4장 개정

제10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포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